

지식 집단으로서의 홍문관과 권력으로서의 도학:

—성종대를 중심으로—

송응섭*

- I. 들어가면서
- II. 성종의 즉위에 따른 경연의 활성화와 홍문관의 설립
- III. 청요직 중심 권력구조로의 개편과 홍문관 위상의 강화
- IV. 권력으로서의 道學과 道高于君 형세의 개막
- V. 맺음말

I. 들어가면서

단재 신채호 선생은 ‘묘청의 난’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김부식을 儒學徒로 명명하며 유교사상에 경도된 사대주의자로 비난했다. 조선이 망해가는 혹은 망해버린 상황에서, ‘민족’을 매개로 국민국가의 건설을 꿈꾸었던 단재의 입장에서, 유교와 관련된 모든 것은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기에 김부식에 대한 이 같은 이해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단재 선생의 이 같은 이해가 타당한 것인가는 본고의 관심사가 아니다. 오히려 필자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은 조선은 왜 그렇게 유학사상에 기초한 문물제도를 발전시키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한국만큼 중국식 관료제와 유학사상을 내면화시킨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이야말로,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

*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

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논자마다 입장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입장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조선 성종대 홍문관과 도학의 관계’라는 주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 주제는 유교사상의 수용과 관련해 조선 사회의 특질을 파악하는데도 유용하리라 생각되는데, 특히 조선시대 지식과 권력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

이에 필자는 그동안 필자가 진행해온 연구 성과들에 기초해 성종대 홍문관이 설립되고 도학이 흥기하는 맥락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16세기, 소위 사림의 시대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홍문관이라는 관청이 어떠한 속성과 위상을 갖고 있었고, 또 도학이 흥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으며, 아울러 국왕권과는 어떤 관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조선사회에서 도학이 지배이념으로 부상하고 있던 양상과, 관념적 사상의 수준을 넘어 현실적인 권력으로 작동되는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 성종의 즉위에 따른 경연의 활성화와 홍문관의 설립

(1) 성종의 즉위와 경연의 활성화

세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예종은 고작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재위 기간을 마치고 21세의 나이로 운명했고, 그 때 원자인 齊安大君은 겨우 4세에 불과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¹⁾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世祖妃 貞熹王后는 院相들에게 의견을 구하였지만, 擇君의 상황에서 자칫 忠逆의 是非가 엇갈릴 수 있는 민감한 문제였던 만큼, 원상들은 왕실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正희왕후에게 결정을 미뤘다.²⁾

“대비가 말하기를 元子は 아직 襁褓 속에 있고 月山君은 본디부터 질병이 있다. 者山君

1) 의경세자(덕종)의 장자인 月山大君을 대신하여 자을산군이 왕위에 오른 것을 두고 國舅의 지위에 올라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한명회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金宇基, 2001 「朝鮮 成宗代 貞熹王后의 垂簾聽政」 『朝鮮史研究』10 ; 韓春順, 2002 「成宗 초기 貞熹王后의 政治 聽斷과 勳戚政治」 『朝鮮時代史學報』22).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일이지는 하지만 성종이 아닌 월산대군이 즉위했다고 하더라도 한명회의 권력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겠는가를 고려해 볼 때, 성종의 즉위와 관련해 한명회의 개입을 너무 과도하게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성종의 즉위와 관련하여 관심을 요하는 문제는 나이 어리고 선택된 군주가 등장함으로써 초래될 조정의 역학관계와 권력구조의 변화와 같은 부분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마도 그것은 월산대군이 즉위해도 마찬가지로의 문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2) 『성종실록』 권1, 성종 즉위년 11월 28일(무신) “大妃哀泣良久 命顯祖及瑊 遍問諸相曰 誰可主喪者 叔舟等同辭啓曰 此非臣等所敢議 願聞教旨”

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世祖께서 매양 그의 기상과 도량을 일컬으면서 太祖에 견주기가 지 하였으니 그로 하여금 主喪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신숙주 등이 대답하기를 진실로 마땅하다고 하였다.”³⁾

위 기사에 따르면 元子は 너무 어려 大統을 이어받기가 곤란하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세조와 정희왕후 사이의 소생 가운데 夭死한 懿敬世子の 맏아들인 月山君이 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이었으나 병약한 체질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고, 대신에 영민한 者山君을 후계자로 결정하였던 것인데, 그가 바로 조선의 제9대 국왕인 성종이다.

예기치 못했던 新王의 즉위는 왕실과 훈구 재상들 모두에게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성종의 나이가 幼沖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왕으로서는 거의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그를 제대로 된 자질을 갖춘 군주로 성장시켜야 하는 과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또한 세조의 사망에 연이어 예종이 급서하게 됨에 따라 절대 권력의 공백으로 인해 초래될지도 모르는 예기치 않은 변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王位에 도전하는 인사들이 없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했을 것이다. 훈구 재상들 자신이 단종대의 유사한 혼란을 틈타 정권을 장악했던 당사자들이었던 만큼, 실질적인 위협이 없었더라도 이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왕실과 원상들은 성종의 즉위로 인해 발생한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垂簾聽政을 단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왕에 시행되고 있던 院相制를 보강하는 조처를 취하였다. 수렴청정의 경우, 성종의 나이가 13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정희왕후가 성종이 장성할 때까지 그를 대신해서 국정을 주관하였던 것인데, 조선시대 최초의 수렴청정이었다.⁴⁾ 원상제의 경우, 세조 말년부터 세자(예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세조의 명으로 시행되고 있던 제도였는데,⁵⁾ 성종의 경우 예종에 비해 나이가 어렸던 만큼, 예종대보다 원상들의 활동이 강화될 소지가 다분하였다.

수렴청정과 원상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종이 국왕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기 때까지 그를 보호하고 보필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그 지점에 있어서만큼은 정희왕후와 원상들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었다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정희왕후는 수렴청정을 통해 예기치 않게 세조의 또 다른 후계자가 된 어린 성종을 장성한 군주로 성장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고, 원상들 또한 세조의 종통을 이은 후계자를 보호하는 한편 원상이라는 지위를 통해 보다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종에 대한 보호와 육성은 정희왕후로 대표되는 왕실과 원상들로 대표되는 훈구 재상들 모두의 이해관계와도 일치되는 측면이 있었다.⁶⁾ 그런 측면에서

3) 위의 주 참조. “大妃曰 元子方在襁褓 月山君素有疾病. 者山君年雖幼 世祖每稱其器度 至比之太祖 令主喪何如 叔舟等對曰 允當 議遂定.”

4) 垂簾聽政과 관련해서는 김우기, 앞의 논문(2001); 韓春順, 2002 「成宗 초기 貞熹王后의 政治 聽斷과 勳戚政治」 『朝鮮時代史學報』22 참조.

5) 金甲周, 1973 「院相制의 成立과 機能」 『東國史學』12 참조.

6) 종친 세력은 이러한 이해관계에서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종친들 가운데

보았을 때, 계유정난 이후 시작된 세조와 측근 공신들과의 유대 및 그에 입각한 국정 운영은, 기본적으로는 성종의 즉위 이후에도 수렴청정과 원상제를 매개로 계속해서 유지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종의 즉위로 인해 집권 세력의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⁷⁾

성종의 즉위와 거의 동시에 경연이 활성화되었다. 세조의 集賢殿의 혁파와 함께 폐지된 經筵官制는,⁸⁾ 專任官이 아닌 兼官制의 형태로 예종이 즉위하면서 부활되었다. 하지만 예종의 경연에 대한 인식은 세조와 거의 마찬가지로 경연이 복구되기는 했지만 활성화 되지는 않았다.⁹⁾ 예종은 ‘다리가 아파 경연에 나갈 수 없다’는 등¹⁰⁾ 身病을 핑계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경연이 불과 3차례 실시되는 데 그치고 말았다.¹¹⁾

이에 비해 성종은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경연의 강화가 불가피했다. 게다가 성종은 선택된 군주(擇君)라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세조나 예종처럼 경연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웠다. 오히려 경연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선택이 올바른 결정이었음을 증명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성종대의 경연은 애초부터 활성화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원상들로 하여금 領事를 겸대하여 운번으로 경연에 입시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고,¹²⁾ 이어 신숙주가 마련한 經筵事目を 토대로 본격적으로 경연이 시작되었다.¹³⁾ 한편 성종은 朝講과 晝講 뿐만 아니라 夕講 또한 시행할 것을 건의한 사간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스스로 1일 3강의 원칙을 세워나갔고,¹⁴⁾ 1472년(성종 3) 1월에는 夜對의 격식까지 갖추었으므로 명실상부한 ‘好學의 君主’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비록 치세 중반에 이르러 晝講과 夕講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성종은 치세 말까지 1일 3강의 원칙

세조에게 협력했던 사람들은 세조의 치세 기간 동안 각별한 대우를 받았는데, 특히 ‘兒宗’ 혹은 ‘內宗親’ 등으로 분류되며 훈구 공신들 못지않은 세를 형성하고 있던 부류가 있었다(韓忠熙, 1995 「朝鮮世祖代(1455~1468) 宗親研究」 『韓國學論集』22 ; 韓忠熙, 1998 「朝鮮世祖代の內宗親에 대하여」 『慶北史學』21 참조). 그러나 이들은 성종의 즉위 이후 세조를 대신하여 정희왕후를 중심으로 하는 왕실 권력의 재편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소외되는 형국이 조성되고 있었다. 더구나 성종의 왕위가 확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향력 있는 종친이라는 지위는 자칫 왕위를 불안하게 하는 잠재적인 불안요소로 분류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구성군 준의 옥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세조의 측근으로 그의 권력에 동참하고 있었던 부류 가운데 종친계열은 성종의 즉위로 말미암아 권력의 핵심부에서 점차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7) 훈구 재상들의 입장에서는 예종의 즉위 직후 왕권 강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 관계가 조성되었던 경험을 한 차례 했었기 때문에, 나이 어린 군주를 보호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던 정희왕후와의 유대가 어떤 측면에서는 훨씬 더 용이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睿宗대 정국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정두희, 앞의 책(1983), 231~240쪽 참조.

8) 『세조실록』 권4, 성종 2년 6월 6일(갑진) “命罷集賢殿 停經筵 其所藏書冊 竝付藝文館掌之.”

9) 『예종실록』 권1, 예종 즉위년 10월 6일(임진) “前此 吏曹請置經筵官 上曰大行大王遺教 儒生好高談異論 群議時事 不可別設一官. 今宜皆以他司兼之 逐日進講. 至是 堂上依舊額 郎官只置六員 皆稱侍講官.”

10) 『예종실록』 권2, 예종 즉위년 12월 18일(갑진)

11) 南智大, 1980 「朝鮮初期의 經筵制度」 『한국사론』6 134쪽.

12) 『성종실록』 권1, 성종 즉위년 12월 8일(정사) “傳曰諸院相令帶領經筵 輪日入侍.”

13) 『성종실록』 권1, 성종 즉위년 12월 9일(무오)

14) 『성종실록』 권3, 성종 1년 2월 14일(계해) “今經筵 只御朝晝 而不御夕講 恐非磋磨及時之意. 乞依舊制講讀.”

아래 이를 충실히 따르려고 노력했다고 할 수 있겠다.¹⁵⁾

경연의 재개 및 활성화를 통해 어린 성종은 聖君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하나둘씩 쌓아갈 수 있었지만, 경연의 활성화는 국왕의 성실한 수업 참여라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보다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경연을 통해 유교 이념에 대한 강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동시에 군주는 유교 이념에 기초하여 왕도정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끊임없이 강조되면서, 왕권이 자의적인 행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류가 조성되는 한편, 국정 운영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교를 국시로 삼고 있던 조선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었지만, 세조의 집권과 함께 크게 훼손된 이러한 원칙들이 경연의 활성화에 따라 다시금 강조되었던 것이다.¹⁶⁾ 그런 의미에서 경연은 유교 이념의 권위를 현실 정치 무대에서 확인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는 기제였다는 점에서, 신료들로서는 국왕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연의 활성화가 초래한 또 다른 변화로는 경연 석상을 매개로 국왕을 비롯하여 신료들 상호간에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¹⁷⁾ 朝講에는 의정부·육조·대간·승정원·예문관(홍문관) 등 정부 주요 기관의 관료들이 윤번으로 함께 입시하고 있었는데,¹⁸⁾ 강의가 끝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정무에 대한 의견들이 나누어지면서 재상들뿐만 아니라 말단 경연관들 또한 품고 있던 생각들을 개진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경연관을 구성하고 있던 예문관(홍문관)원을 비롯해 대간·사관 등 연소한 청요직 관리들이 국왕에게 직접 下情을 상달할 수 있는 항시적인 루트를 확보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 이들의 발언권과 정치적 위상은 이전에 비해 크게 향상될 수 있었던 것이다.¹⁹⁾

15) 南智大, 앞의 논문(1980), 136쪽.

16)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연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원상을 비롯한 다른 신료들 또한 경연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성종대 원상을 역임한 13명 가운데 신숙주·정인지·최항·정창손·윤자운·조석문 등 무려 6명이나 집현전 학사 출신들이었다. 이들은 세종대 이래 경연이 공식화 되는 과정에서 그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었던 만큼, 경연을 통해 성종을 聖君으로 육성하려는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다른 신료들 또한 이러한 경향성 자체에는 그다지 반감을 보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세조대 지나치게 억눌려 있던 자신들의 입장이 경연 석상에서의 유교 이념에 대한 강조를 통해 활력을 되찾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에 고무되는 측면이 있었다.

17) 權延雄, 1981 「朝鮮 成宗朝의 經筵」 『韓國文化의 諸問題』 79 ~ 87쪽.

18) 경연에 참석하는 인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朝講에는 당직원상 2인, 경연당상 2인, 낭청 2인, 승지 1인, 대간 각 1인, 사관 1인이 참여하였고, 晝講에는 경연당상 2인, 승지 1인, 경연낭청 1인, 사관 1인이, 夕講에는 승지 1인, 경연관 2인, 사관 1인, 경연낭청 1인이, 夜對에는 입직 경연관 2인, 사관 1인, 승지 1인, 부제학 1인 등으로 이루어졌다.

19) 특히 대간의 경우 자신들은 정책 및 정치적 현안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만큼, 경연을 통해 대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곤 했다. 뿐더러 경연이 기본적으로 유교적 원칙을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대간의 유교 원칙에 입각한 원론적인 의견 개진을 막는 것 자체가 경연의 성격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대간은 이를 심분 활용하여 정무 처리 과정에서 윤허를 받지 못한 안건을 다시 한 번 건의하는 기회로 활용하곤 하였다.

(2) 홍문관의 설립

경연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경연 전담 기관으로 예문관의 기능이 확대되어 집현전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弘文館의 설립으로 발전했다.²⁰⁾ 세조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집현전을 혁파하였으나, 인재의 양성과 학문의 진흥이라는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 兼藝文館職을 설치하였는데, 비록 兼官이긴 했지만 예문관을 통해 집현전의 명맥이 유지되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²¹⁾

한편 성종대 경연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경연을 전담할 관원들이 필요하게 되자, 예문관에 부제학~부수찬에 이르는 專任官 15명을 증원하여 이들로 하여금 지제교·경연·춘추관의 직임을 갖게 함으로써,²²⁾ 예문관은 본래의 기능에다 집현전의 직제와 기능까지 추가된 상태가 되었다.²³⁾ 또한 藝文錄의 작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는 노력 속에서,²⁴⁾ 예문관원의 久任과²⁵⁾ 賜暇讀書의 재시행이²⁶⁾ 이루어졌고, 성종 9년 2월에는 예문관에 박사(1명), 저작(1명), 정자(2명) 등 정7품~9품에 이르는 참하관을 설치하여 젊고 학행 있는 자들의 양성을 추진하였는데,²⁷⁾ 이는 결국 副題學으로부터 正字에 이르는 옛 집현전 직제가 완전히 회복되어 예문관에 병설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예문관 안에 집현전과 본래 예문관의 직제가 병합되자, 봉교·대교·검열 등 종래의 예문관 참하관 8명에게 독립된 기관을 설치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수차례의 논의 끝에 옛 집현전 직제인 부제학 이하 정자에 이르는 각원은 弘文館을 별도로 설치하여 實職으로 전임·발령하고, 종래의 예문관 참하관인 봉교 이하의 8명은 그대로 예문관에 남게 되었다.²⁸⁾ 이로써 세조대 사육신 사건을 계기로 폐지된 집현전은 폐지된 지 22년 만에 홍문관의 이름으로 부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예문관의 점진적인 기능 확대를 통해 집현전의 직제들이 복귀되어 홍문관이라는 새로운 관서로 부활하게 된 것은, 결국 세종대 집현전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이 국정의 중추로 성장해 갔던 상황이 성종 초반부터 재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홍문관의 비중 확대와 그에 따른 文翰 기능 담당 인사들의 역할 증대는 자연스

20) 이와 관련해서는 崔承熙, 2004 「弘文館의 成立經緯」 『朝鮮初期 言論史研究』 지식산업사 참조.

21) 『세조실록』 권18, 세조 5년 12월 26일(갑술) “吏曹啓 文臣拘於吏職 專業學問者少. 請擇三品以下文臣年少聰敏者十五人 職兼藝文館 令仕本館習業. 從之.”

22) 구체적인 직위와 인원수는 아래와 같다. 부제학(1명)·직제학(1명)·전한(1명)·응교(1명)·부응교(1명)·교리(2명)·부교리(2명)·수찬(3명)·부수찬(3명)

23) 『성종실록』 권4, 성종 1년 4월 26일(갑술)

24) 『성종실록』 권22, 성종 3년 9월 24일(정사) “議政府諸館堂上及六曹參判以上 會忠勳府 議選堪爲藝文錄者 尹孝孫等三十人以啓.”

25) 『성종실록』 권41, 성종 5년 4월 8일(임술)

26) 『성종실록』 권68, 성종 7년 6월 4일(을해) “吏曹啓 今承傳教 擇年少文臣就閑處讀書節目 商議以啓 世宗朝 擇文臣年少聰敏者六人賜暇 許於京外閑處任意讀書. 今亦依古例施行 令主文堂上臨時書考講或製述 糾檢勤慢. 從之.”

27) 『성종실록』 권89, 성종 9년 2월 28일(신유)

28) 『성종실록』 권90, 성종 9년 3월 (신사) “傳旨吏曹曰 藝文館副提學以下各員 移差弘文館實銜 奉教以下八員 仍帶藝文館 弘文館應教二員內一員 擇將爲主文者兼差應教 前此弘文館直提學都承旨兼之 今宜移差藝文館.”

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²⁹⁾

Ⅲ. 청요직 중심 권력구조의 형성과 홍문관 위상의 강화

국초부터 이미 ‘국가의 원기=공론=대간 언론’ 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조선 초기에는 언관들의 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마는 않았다. 특히 15세기 전반기 국왕권이 강했던 시기의 언관들은 군주에게 모욕과 처벌 받는 일이 많았고,³⁰⁾ 그런 측면에서 공론의 위상도 온전히 존중되지 못했다.³¹⁾ 하지만 성종대에 이르러 이 같은 기초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당하 청요직³²⁾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형태로 권력구조가 재편되면서, 언론이 항시적으로 활성화되고 공론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다시 말해 권력구조 상에서 청요직들의 독자적인 영역이 구축되며 국왕 및 대신들에 맞설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언론이 갖는 파워 역시 강화되었던 것이다.

주지하듯이 청요직은 조정의 주요 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관직군이라 할 수 있다.³³⁾ 대체로 뛰어난 문장 능력과 경전적 소양이 요구되는 홍문관·예문관·사헌부·사간원과 정무 기능을 담당하는 의정부·이조·병조·예조·승정원 등의 당하관직이 이에 해당한다.³⁴⁾ 청요직은 기본적으로

29) 홍문관의 성립과정을 통해 보았을 때 드러나는 중요한 지점은, 홍문관의 설립은 이미 그 단초가 세조대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세조가 비록 집현전을 혁파하기는 했지만 집현전이 담당하고 있던 실제적인 기능들, 이를테면 국정 운영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의 양성과 같은 측면들은 어떤 식으로든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세조는 다소 비정상적인 형태로 예문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활용하고 있었고, 이것이 성종의 즉위 이후 집현전의 옛 관제들이 하나둘씩 회복해 나가다가 마침내 홍문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기왕의 홍문관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주로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려는 성종의 정치적 의도나 김종직을 위시한 사림의 진출과 연관 지워 홍문관을 설명하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헌 기능을 담당할 유능한 인재의 확보라는 정부 내에서의 현실적인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고, 세조의 집현전 혁파를 쉽게 뒤집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문관의 기능 확대를 통해 타협점을 찾다가, 결국 성종 9년에 이르러 홍문관이라는 이름으로 집현전의 부활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홍문관의 설립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동기는 ‘우수한 인재의 양성과 확보’, 다시 말해서 정부 내에서 집현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홍문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필요성을 제기한 사람들은 바로 신숙주·정창손·홍유손 등과 같은 원상 혹은 훈구 재상들이었다. 이와 같은 지점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홍문관의 설립과 위상 강화를 마치 왕권 강화와 사림파의 진출과 같은 정치적 요인에만 주목하는 것은, 홍문관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0) 최승희, 2004 『조선초기 언론사연구』 지식산업사, 322~335쪽

31) 『세조실록』 권39, 12년 8월 29일(戊辰) ; 9월 2일(庚午)

32) 본고에서 말하는 청요직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당하 청요직을 의미한다.

33) 남지대, 1992 「朝鮮後期の ‘黨爭’ 과 淸要職」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4) 청요직 각각의 영향력과 위상은 늘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상기한 관직들이 청요직으로 운용되고 있었으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정 관서가 새롭게 부상하거나(세자시강원) 기존의 청요직 가운데 그 위상이 약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의정부 겸상).

로 재상에 오르는 계제(階梯)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문과 합격자들 가운데 문지가 높고 문학적 재능이 출중한 인사들에게 조정의 주요 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동시에 다른 관직과 구별되는 특혜를 받았던, 다시 말해 엘리트 관료들의 재상 진입 코스로서의 성격이 짙었다. 실제로 청요직들은 순자법(循資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일(仕日) 및 고과(考課) 충족 기준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고, 겸직과 포상을 통한 승진 기회도 많았다. 일단 청요직군에 들어오면 무난하게 당상관까지는 이를 수 있었다.³⁵⁾ 경우에 따라서는 당상관으로의 초고속 승진도 가능했는데, 빠르게는 5년(권건)과 8년(신중호) 만에 당상관에 진입한 사례가 확인된다.³⁶⁾ 문과 합격자라도 당상관에 오르는 비율이 높지 않았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³⁷⁾ 조정에서 청요직이 갖는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청요직은 이 같은 위상을 갖고 있었음에도 15세기 전반까지는 공고한 국왕권과 대신들의 영향력 하에서 독자적인 세력화를 이루지 못한 채 당상관 계제로서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성종대에 이르러 이 같은 사정은 크게 바뀌었다. 성종이 유주(幼主)로서 수렴청정과 원상제의 보호를 받게 되고, 왕권에 기대어 있던 공신 권력 역시 점차 위축되어 가는 상황에서,³⁸⁾ 청요직들이 다양한 언론 관행을 강화시켜 나가며 대신들과의 예속 관계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 조정안에서 청요직 관료들만의 독자적인 영역이 구축되어 갔으며, 일종의 ‘청요직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는 청요직들 간의 공고한 연대가 이루어 졌다. 그리고 그렇게 구축된 연대의 힘을 기반으로 공론 전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간을 창구삼아, 국왕과 대신을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을 향해 발언권을 키워 갔다.

성종대 청요직 관료들 간의 긴밀한 유대가 가능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청요직 인사이동이 갖는 특성에서 기인한 바가 컸다. 청요직 사이에는 상호 연동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청요직 역임자들은 문과합격 후 참상관을 거쳐 당상관으로 진입해 가는 과정에서 청요직군 내의 어느 한 관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서를 교차하고 있었다. 즉, 홍문관·예문관의 관각직, 사헌부·사간원의 대간직, 의정부·이조·병조·예조의 낭관직을 천관(遷官)과 거관(去官)을 통해 두루 교차하면서 승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요직군에 진입한 인사들은 ‘청요직 출신’이라는 일종의 엘리트의식을 공유하는 한편, 당상관에 이르는 과정에서 선후임으로서 혹은 동료로서 함께 근무하는 일이 많았다. 아울러 대간이 언사로 문책을 받게 되면 동료 언관들은 연대책임을 지려 했고, 홍문관·예문관원 등은 군주에게 언관에 대한 너그러운 대우를 종용하는 등 ‘공론의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끈끈한 연대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왕과 공신·대신 등 위로부터의 압박이 느슨해질 경우, 상호 연대할 수 있는 고리들이 강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었다.

청요직들이 영향력을 신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대간은 고유의 권한과 관행이었던 서경(署經)

35) 송웅섭, 2017 「조선 전기 淸要職의 위상과 인사이동 양상」 『한국사상사학보』 55, 15~22쪽

36) 송웅섭, 2017 앞의 논문, 22~41쪽

37) 김창현, 1999 『조선초기 문과급제자 연구』 일조각, 140~151쪽

38) 송웅섭, 2011 『조선 성종대 공론정치의 형성』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40~50쪽

과 피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언론이 갖는 중량감을 키우는 한편, 인사 문제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서경은 5품 이하의 관료들을 임명할 때 그들의 가문과 품행을 점검하는 인사 행정의 한 절차이다.³⁹⁾ 성종대로 들어오면서 대간은 언관 재직 시 언론활동에 소극적이었거나 도덕적인 문제로 물의(物議)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서경을 거부했다. 특히 언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평소 물망이 부족해 대간에 적합하지 않다고 낙인찍힌 인사의 경우, 국왕의 재촉에도 끝까지 서경을 거부하여 당사자가 임명된 관직에서 체직됨은 물론, 이후의 임용에서도 서경을 거부하였다. 또한 형제들끼리 재산을 다투거나 성 추문이 불거진 인사들에 대한 서경 거부도 강화되었다. 대체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사람은 대간의 서경에 막혀 청요직에 들어오기가 어렵거나 이미 진입한 인사들이라도 청요직군에 재임용되기가 어려워져 갔다.

피험의 경우 자신에게 드리운 혐의를 피하는 절차로 사직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⁴⁰⁾ 성종대부터는 현안을 놓고 대간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대간은 자신들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언책지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피험을 요청했다. 또한 피험을 통해 대간 언론이 공론으로서의 통일성을 갖추도록 조정하여, 대간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릴 경우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이 피험을 통해 체직되거나, 반대로 다수가 정계(停啓)를 희망하더라도 한 두 사람이 지속을 고집하면 다수가 피험을 제기해 체직되기도 했다. 또한 피험을 인사에 대한 비토권으로도 활용하여 대간으로서 적임자가 아닌 사람이 대간에 임명될 경우 대간 전체의 피험을 통해 해당 인사의 임명을 막기도 했다.⁴¹⁾

‘청요직군 내에서의 교차적인 인사이동’, ‘대간의 청요직 여론 창구로서의 기능’, ‘서경과 피험을 통한 인선 개입’ 등과 같은 관료제 운영 방식의 변화가 청요직들의 영향력 확대에 활용되었던 물적 기반이었다면, ‘공’과 ‘도학’ 담론에 기초한 ‘도덕적 권위’의 차용은 청요직들이 군주와 대신에 저항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근거였다. 특히 청요직들이 도덕적 권위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주론자(主論者)’가 등장하였다.⁴²⁾ 주론자란 좁게는 대간 내부에서 언론의 방향성을 잡아주며 강경한 언론을 독려해 나가는 인사요, 넓게는 특정 현안에 있어서 청요직 전반의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청요직들은 주론자의 활동을 통해 주장하는 바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청요직 전반이 도학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士)’로서 위치지우며 국왕과 대신에 대한 위계적 한계를 극복해 나갔다.

39) 朴龍雲, 1980 『高麗時代臺諫制度研究』 一志社, 256~263쪽 ; 박재우, 2010 「고려시대 署經의 행정절차와 성격」 『역사문화연구』 36

40) 피험과 관련해서는 송응섭, 2012 앞의 논문 참조.

41) 결국 서경과 피험은 청요직 여론이 공론으로서 영향력 있게 전달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동시에 청요직 사이에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을 배제시키는 인사권으로도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청요직 인사들은 동료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동료들 가운데 일부가 대신과 국왕에 불췌는 흐름을 막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청요직들의 독자적인 영역 구축에 일조하고 있었다.

42) 주론자와 관련해서는 송응섭, 2014 「조선 전기 主論者의 등장에 대한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68 참조.

한편, 홍문관은 청요직들이 영향력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구심점이 되었다. 홍문관은 청요직 내에서도 가장 많은 자리⁴³⁾를 갖고 있었으며, ‘홍문록’이라는 홍문관 자체의 후임자 선발에 입각한 인선이 이루어졌다.⁴⁴⁾ 또한 홍문관에는 차차천전(次次遷轉)의 승진 규정이 있어 일단 홍문관원으로 선발되면 정3품 당상 부제학까지 차례로 승진해 갔다. 물론 중간에 대간과 낭관직 등으로 옮겨갈 수도 있었지만, 그럴 때라도 본관(홍문관)과 서로 왕래하면서 승진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타 관서로 이동하지 않고 홍문관에서만 수직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럴 경우 다른 인사들에 비해 승진이 빨랐다. 홍문관이 갖고 있는 이 같은 특징들로 인해 홍문관은 ‘청요직 안의 청요직’으로서 인식되고 있었다.⁴⁵⁾ 따라서 홍문관이 언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며 언론을 통해 국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나가자, 홍문관은 청요직 전반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고 청요직들은 홍문관을 중심으로 보조를 맞추어 나갔다. 더구나 성종대의 홍문관에는 세종이 집현전과 대간 사이의 인사 교류를 막았던 것과 같은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다.⁴⁶⁾ 따라서 홍문관원 가운데서 대간에 제수되는 사람들이 많았고, 대간과 홍문관의 유대는 이전보다 커져 가는 가운데 언론의 영향력 또한 신장될 수 있었다.

유교 이념의 기치 하에 건국된 조선은 국초부터 언론과 공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관료조직에 대한 국왕의 장악력이 공고하게 발휘되는 가운데 현실적인 정치 운용에 밀려 언론과 공론의 위상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성종대 군주권과 공신 권력의 위축 속에 청요직들은 홍문록, 서경, 피험 등을 활용하면서 청요직들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나갔다. 특히, 그 과정에서 홍문관은 관직적 지위에 있어서나 이념적 측면에 있어서나 청요직 전반의 활동을 뒷받침해 주면서 구심점이 되어 주었다. 그 결과 홍문관을 위시한 청요직들은 국정 현안마다 자신들의 주장을 공론에 비정하며 공론에 따른 국정 운영을 촉구해 나갈 수 있었다.

IV. 권력으로서의 道學과 道高于君 형세의 개막

성종 대 국정의 특징적인 면모는 경연의 활성화 및 홍문관의 설립, 그리고 언론의 활성화와 청요직들의 영향력 증대로 요약할 수 있다. 성종대는 이에 힘입어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가 전개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군주의 입장에서 성종대의 상황은 다소 역설적인 측면이 있었다. 즉, 성종이 성실히 경연에 임하며 언론을 우용해 주었지만 그가 맞닥뜨린 상황은 언관들에 대한 통제가 점차 어려워지게 됨은 물론, 인사권까지 일부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

43) 정9품 정자~정3품 부제학까지 17과이다.

44) 최승희, 1978 「弘文錄考」 『大邱史學』 15:16

45) 송용섭, 2017 앞의 논문, 32~41쪽

46) 세종의 이 같은 입장은 문종이 대리청정을 시행하고 첨사원이 이를 보좌하는 과정에서 퇴색되기 시작했다. 김순남, 2005 「조선 세종대 말엽의 정치적 추이」 『사총』 61

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언관들의 활발한 활동을 성종의 배려에 대한 배신이라고 해야 할까?

어떤 의미에서 공론을 중시하며 현실의 다양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대간의 언론활동은 예견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성종처럼 성실하게 도덕과 도학을 수양하고 유교적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군주 밑에서의 언론 활동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성종은 즉위 초부터 학문에 뛰어난 문신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간과 홍문관을 거치며 淸名을 드날리는 신료들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끌어안아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언론이 적극적으로 개진되는 상황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한마디로 언론의 활성화는 유교적 정치 이념에 충실하게 통치해온 성종이 감당해야 했던 일종의 ‘골레’ 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유학자들은 군주가 천하 만백성을 다스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었지만 거기에는 그에 걸 맞는 자격을 갖춘 경우라는 전제가 깔린 것이었다. 이 때 군주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이란 도덕의 함양이었는데, 유학에서 말하는 도덕이란 인류 전체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규범이자 군주의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고대 사상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군주의 통치권을 도덕에 기초하는 유가의 정치사상은 殷나라나 周나라와 같은 상고시기의 ‘德’ 개념까지 소급된다. 은대의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대상에게 선대했을 때 시혜를 받은 측에서 그것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A가 B에게 덕하다’ 와 같은 형태로 표현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덕’ 과 관련한 용례는 주로 왕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군주가 조상신 등을 대상으로 누군가의 안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의미의 제사를 지내게 되면 제사를 받은 신이 군주의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왕이 호소한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덕’ 관념은 주나라에 이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진전하는데, 왕이 자신의 의무를 도외시 한 채 ‘덕’ 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命을 주관하는 天에 의해 통치권이 ‘덕’ 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 갈 수 있다는 ‘혁명’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문화 속에서 는 ‘덕이 없는 왕은 제구실을 할 수 없다’ 는 입장이 통용되면서 왕권을 정당화시키는 기제로 군주의 도덕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덕’ 을 강조하는 정치사상은 공자와 맹자에 의해 보다 정연한 논리를 갖추게 되었다. 두 사람 모두 군주가 자신의 도덕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정치적 안녕을 이룰 수 있고, 이것은 다시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고 설파하였다. 군주의 도덕 함양에 기초한 왕도정치를 천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춘추전국시대 이래 유가는 진시황의 천하 통일기는 물론 한나라 초중반까지도 法家나 黃老思想에 밀려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 못했다. 그러다가 전한 말엽 유교의 국교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교 교리 자체에 지배자로서의 황제라는 존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논리를 발전시켜, ‘황제의 덕이 천지와 짝하여 하늘이 그를 천자로 삼아주었다’ 는 이른바 ‘聖人天子論’ 과 같은 현실적인 정

치 이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덕을 강조하는 유가 본래의 입장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존하는 황제가 요순과 같은 최고의 성왕에 비견되는 덕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해 줌으로써 그의 통치에 정당성을 제공하며 적절한 타협점을 찾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왕권의 정당성을 군주의 덕에서 찾으려 하는 전통이 여전히 고수되고 있는 점은 흥미로운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송대의 성리학에서는 이전에 비해 정치적 위계와 도덕적 위계 사이의 긴장을 훨씬 더 팽팽하게 가져가면서 국왕에게 요구하는 도덕 수준을 강화하고 있었다. 성리학에서는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 사이에 ‘理’ 라는 공통의 기초가 놓여 있어, 모든 인간은 자신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치를 깨달아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성인’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인류는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도덕을 함양해야 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진정한 목표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성인’이 되는 일이었고,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도학’이라고 부르는 ‘학’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학’이란 고대의 이상[聖人の道]을 이해하고 구현하는 방식이요, 세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일이며, 마음을 사용하여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보아 내는 일이자,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실현하여 도덕을 존재하게끔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성리학적 사고에서는 비록 황제라 할지라도 도덕에 있어서는 일반 사들처럼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존재가 된다. 아울러 관직에 나가 황제를 도와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사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표가 아니게 된다. 관직 진출은 일종의 선택 사항일 뿐, 도학을 통해 도덕을 함양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정치적 권위는 도덕적 권위를 수반할 때 확보되는 것으로서, 성리학자들이 통치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군주의 지위나 업적에 있기 보다는, 그의 행동이 얼마나 도덕적 양심[天理]에 의해 인도되었느냐에 있게 되는 것이었다. 통치자도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인이 될 수 있는 도덕적·지적 잠재력[天理]을 가진 존재이자 동시에 타락에도 노출된 존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리학의 논리에 입각하면 군주가 공적인 이해에 합치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잠재력을 계발시키기 위해서는 그 역시 도학을 연마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결국 성리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기초하거나 보편적일 수 있는 ‘학’의 기준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통치자에게도 그와 같은 기준을 수용하라고 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통치자의 위상을 상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을 따른다면, 이제 국정에서의 참된 ‘公’의 실현은 군주가 ‘聖人天子論’과 같은 논리 속에서 도덕함양을 부당하게 전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군주 자신이 성실하게 성인의 도를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것이거나, 군주가 道學을 습득한 자들을 등용시킬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公’의 세계를 구현하는 진정한 주체는 군주나 정부가 아니라 도학을 실천하는 學人, 즉 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집권 중후반으로 가면서 성종이 맞닥뜨린 상황은 바로 이와 같은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실하게 도학을 추구하며 국정에 임했던 성종이었기 때문에, 국왕으로서 갖게 되는 정치적 위

계와 한 사람의 학인으로 갖게 되는 도덕적 위계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며 언론을 매개로 도덕적 권위를 주장하는 신료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종이 아무리 대간과 홍문관원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시정과 관련한 그들의 언론을 용납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도덕과 공론의 명분을 기준으로 삼아 규범에서 벗어나는 성종의 私的 정치 활동과 그릇된 국정 운영에 대해 비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국정에 대한 이들의 비판은 경연에 성실했던 성종에 대한 존경이나 애정과는 별개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대간과 홍문관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언론 활동을 통해 현안들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야말로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방편이었던 것이다.

다음은 홍문관에서 국정 현안 및 성종의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 정면으로 맞섰던 1491년(성종 22)의 ‘北征에 대한 반대’와 1493년(성종 24)의 ‘유호인 항명 사례’이다. 이 두 사례를 통해 성종의 도학에 기초한 통치가 궁극적으로는 ‘도의 권위가 군주보다 높다’는 道高于君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北征에 대한 홍문관의 비판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성종 22년의 북정은 여진족이 조선의 변방 장수를 살해하자 조선에서 정벌을 단행하여 보복하고자 했던 기병이었다. 조정에서는 허종을 도원수로 삼는 등 북정을 위한 계획들을 준비해 갔다. 하지만 대간과 홍문관에서는 북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홍문관에서 북정을 반대한 이유는 북정을 단행할 경우 평안도와 황해도 등 서변이 위협해 질 수 있으며, 북정 시 길잡이 역할을 담당하는 향화인은 신뢰할 수 없는 자들로서 그들의 말만을 믿고 적진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며, 소요를 일으킨 자들이 여진 가운데 정확히 어느 족속인지도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이 일과 무관한 족속을 해치게 될 경우 또 다른 골칫거리를 만들 수 있으며, 다행히 이 번 거사에 성공하더라도 2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7만 석의 곡식을 소모하는 커다란 부담을 치르는 거사여서, 행여 남은 적들이 매년 변경을 괴롭힐 경우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이었다.⁴⁷⁾ 대간에서는 이미 북정에 반대하는 상소와 차자를 수차례에 걸쳐 진정하다가 국왕의 노여움을 사 모두 체직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홍문관에서 북정을 반대하는 보다 정교한 의론을 제기하면서 논의를 이어갔던 것이다. 북정 문제를 홍문관에서 다시 거론하자 성종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문관에서 고집스럽게 북정에 반대하자, 성종은 ‘북방 정벌을 비평하는 사람은 큰 형벌에 처할 것’이며 그것은 홍문관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님을 천명하고 나서야 겨우 그칠 수가 있었다.⁴⁸⁾ 하지만 이러한 경고를 받은 직후엔 잠시 수그러지는 듯하더니 홍문관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수차례 더 북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서 그것이 公論임을 주장하고 있었다. 비록 성종의 강한 의지로 북정은 시행되고 말았지만, 홍문관은 시비를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 대신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결정을 公論에 저촉된다는 명분하에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47) 『성종실록』 권253, 22년 5월 30일(을사).

48) 『성종실록』 권254, 22년 6월 3일(무신).

다음으로, 유호인의 항명건은 성종 24년 대간의 탄핵을 받고 있던 영의정 윤필상이 사직 상소를 올리자 성종이 이를 만류하는 비답을 홍문관원으로 하여금 전달하게 하는 과정에서 홍문관 교리 유호인 등이 이를 거부하며 성종과 대립했던 일을 말한다. 성종 24년 10월 대사간 허계와 대사헌 허침 등은 재변을 계기로 시행된 求言과 그에 따른 應旨上疏를 통해 관직에 부적합한 인물로서 영의정 윤필상 등을 탄핵하였는데, 이에 윤필상은 사직상소를 올렸다. 성종은 윤필상을 위로하며 사직을 허락하지 않는 비답을 내리고 이를 전달하도록 명했다. 하지만 명을 전달할 注書와 翰林이 사정이 있어 홍문관 관원에게 명하여 불운비답을 윤필상에게 내려주도록 했는데, 이 때 교리 유호인이 와서 이를 거부하면서 성종과의 갈등이 불거졌다.

… 교리 유호인 등이 와서 아뢰기를, “… 신 등이 이미 윤필상을 논박하였는데, 또 비답을 가지고 가서 내려 주는 것은 마음에 미안합니다.” 전교하기를, “… 이제 내가 이미 가지고 가게 하였는데, 스스로 義理에 있어 갈 수 없다고 하니 이는 죄가 있는 것이다. 다시 물어서 아뢰라.” 유호인 등이 아뢰기를, “館中에서 장차 論啓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성상의 명령을 기다리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전교하기를, “만일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마땅히 말하도록 하라. 지금은 가서 (비답을) 내려 주는 것이 가하다.” 유호인 등이 아뢰기를, “『書經』에 이르기를, ‘그대는 면대해서 순종하다가 물러가서 뒷말을 해서는 안 된다.’ 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오늘 억지로 上旨를 받들어 비답을 가지고 가서 내려 주고, 또 윤필상의 일을 논박하면, 이는 대면해서는 순종하고 물러가서는 뒷말이 있는 것입니다…” 전교하기를, “임금의 명령은 어길 수 없다. 지금은 가는 것이 가하다. 뒤에 말할 것이 있으면 마땅히 말하도록 하라.” 유호인 등이 아뢰기를, “… 차라리 封還한 죄를 받을 지언정 결단코 상교를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유호인 등이 아뢰기를, “… 신 등이 論思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차마 앞에서만 순종하는 죄에 연좌되어야 하겠습니까? 감히 명령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御書에 이르기를, “그대들이 예전 어떤 사람의 일에 의거하여 임금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가?” 유호인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은 옛사람이 ‘너는 면대해서 순종하다가 물러가서 뒷말을 해서는 안 된다’ 고 한 말에 따라서 이를 아뢰었습니다. 또 館中에서 이미 의논이 정해졌는데, 누가 감히 가지고 가서 스스로 不敬한 죄를 범하겠습니까?” 전교하기를, “죄를 면하는 여부는 나에게 달려 있으니, 그대는 마땅히 가지고 가도록 하라.” … 유호인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용렬하여 능히 天意를 돌이키지 못하니, 청컨대 신 등을 파직시키고, 어질고 능력이 있는 이를 대신 임명하여 가지고 가게 하소서.” 전교하기를, “이전에 비답을 가지고 간 예가 있는가? 이를 물어 보라.” 유호인 등이 아뢰기를, “비답을 가지고 간 예가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임금의 명령이 있으면 어찌 받들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그 사람이 비답에 합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감히 명령을 받들지 못할 뿐입니다.” 전교하기를, “임금의 명령이 이미 정해졌는데 어찌하여 가지고 가지 아니하는가? 다른 관아의 관원으로 가지고 가서 주게 하되 가지고 가지 않은 자는 국문하는 것이 가하다.” 49)

위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의정 윤필상에게 사직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불윤비답을 홍문관원으로 하여금 전달하게 했으나 교리 유희인 등이 이를 거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희인 등의 주장은 대간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윤필상을 탄핵하려던 중이었는데, 자신들의 입장과 상반되는 임금의 명을 받들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論思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앞에서는 순종하고 뒤에서는 탄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 홍문관의 의논이 이미 윤필상을 탄핵하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홍문관원들 중에 이를 무시하고 왕명을 받들 사람이 없을 것이란 말도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종은 몇 번을 거듭해서 왕명을 받들어 윤필상에게 불윤비답을 전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임금이 명을 내렸는데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의리에 있어 죄를 범하는 것’ 이라던가, ‘임금의 명령은 어길 수가 없는 것이니 뒤에 다시 윤필상을 탄핵하더라도 일단은 명에 순종하라던가’, ‘어떤 예에 근거하여 임금의 명을 받들지 않는가’ 라며 계속해서 비답을 전달할 것을 명하다가, 홍문관원들이 끝까지 응하지 않자 마침내 사헌부로 하여금 이들을 국문하도록 하고, 불윤비답은 다음 날 注書로 하여금 전달하도록 하였다.

다음 날 대사간 허계 등은 일전에 대간에서 윤필상의 체직 건에 대해 건의했을 때 성종 역시 그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결단하지 못한 채 오히려 유희인 등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다고 국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윤필상의 체직에 대한 요청을 재개했다.⁵⁰⁾ 홍문관 전한 성세명 등도 유희인을 옹호하면서 국문의 부당함을 아뢰었는데, 성종이 ‘신하가 되어서 임금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의리에 편안하겠는가?’ 라고 반문하자, 성세명 등은 ‘신하의 道는 義를 따르고 임금을 따르지 않는다.’ 면서 무조건적인 순종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드러내었다. 아울러 宋나라 眞宗 때에 學士 劉筠이 丁謂를 丞相으로 삼으라는 制書를 짓도록 한 황제의 명에 따르지 않은 고사를 인용하여 유희인에 대한 처사가 옳지 않음을 아뢰었다.¹⁰⁹⁾⁵¹⁾ 결국 성종은 ‘천변을 맞이하여 갑자기 대신을 내치는 것이 곤란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홍문관에서 자신의 뜻을 체득하지 못한 채 명을 거역하므로 국문하게 한 것이라고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한편, 홍문관에서 아뢰는 말들은 임금을 사랑하여 허물이 없도록 인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특별히 그 말을 따름으로써 경악에서의 보필을 권장한다’ 는 내용의 御書를 내리며 이번 일을 종결시켰으며,⁵²⁾ 윤필상은 영의정직에서 사퇴하였다.⁵³⁾

성종의 말처럼 일이 종묘사직과 관련된 것이 아닌 비교적 사소한 일이었고, 또 시종신으로

49) 위의 주 참조.

50) 『성종실록』 권283, 24년 10월 27일(무자).

51) 위의 주 참조. “世明等更啓曰 人臣之道 從義而不從君. 昔宋眞宗欲復相丁謂 召學士劉筠草制 筠不奉詔 更命晏殊草制 遂卜相丁謂. 當時不謂筠不從君命 而殊自知愧不免爲奸邪. 今好仁等謂之不從君命 可乎. 弼商等處非其位 謗毀叢集 彼亦引嫌 殿下當更求賢德 以代其位 實是公議 何損於聖德.”

52) 위의 주 참조. “御書曰 今鞫好仁等 豈是予之私怒哉. 予以勿疑待大臣 今天變亦豈由大臣也. 深思所召 實由寡躬而不自修省 反黜大臣 於予心安乎. 況無罪名而遽以人言貶大臣 是爲壓災也 予何爲哉. 茲以答批 而弘文館不體予意 不從我言 故鞫之. 今觀所啓皆是愛君納君無過之心 特從所言 以勸經幄之輔.”

53) 『성종실록』 권283, 24년 10월 29일(경인).

홍문관에 대한 성종의 처우가 남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홍문관에서는 그것과는 별개로 군신 간의 의리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별도의 기준 속에서 성종으로 하여금 그 기준에 맞추도록 압박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기준은 바로 ‘신하의 道는 義를 따르고 임금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홍문관의 복정 반대와 유호인의 왕명 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홍문관원들에 대한 성종의 처우가 남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홍문관에서는 그것과는 별개로 국정 운영이나 군신 간의 의리와 관련해 성리학적 기준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점인데, 그것은 ‘신하의 道는 義를 따르고 임금을 따르지 않는다’는 ‘道高于君’의 자세, 즉 ‘도덕적 권위가 군주의 권위보다 높다’는 입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⁵⁴⁾ 따라서 성종 후반기는 국가 정책이나 운영과 관련하여 대간·홍문관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국왕 및 대신들과 맞서는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국가 시책을 놓고 조정에서의 갈등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성종으로 하여금 언론에 대해 느끼는 피로감을 점점 더 크게 만드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대간 등에서 제기하는 근본주의적이며 원칙론에 입각한 시정 비판에 대해 성종은 위압적인 방식, 이를테면 士禍와 같은 폭력을 통해 이들을 제압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홍문관에 대한 지원은 재워 말까지 지속되고 있었는데, 왕명을 거부했던 유호인에 대해서도 성종은 계속해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었다.⁵⁵⁾

이 같은 상황은 재워 기간 내내 성실히 경연에 임하며 학인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던 호학적 군주로서의 면모에 기초하는 것임과 동시에, 정국공신들을 비롯한 상당수의 훈신들이 死去하며 공신 권력이 크게 쇠퇴해 가는 과정에서, 성종이 대간과 홍문관을 거쳐 가며 양성된 인재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했던 상황 등에서 말미암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성종의 우문정치는 결국 그의 치세가 文治에 입각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적 역량들을 증대시켜 나가는데 있어서는 큰 힘이 된 것이었지만, 군주의 통치력과 관련해서는 군주 역시 ‘학’을 통해 도덕을 연마해 나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 공적 기준을 놓고 대간 및 홍문관과 시비를 다투어야 하는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층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54) ‘道高于君’과 관련해서는 정만조, 2008 「朝鮮時代의 士林政治-文人政權의 한 類型」 『反亂인가? 革命인가?』 새미 참조.

55) 『성종실록』 권286, 25년 1월 16일(병오); 1월 16일(병오); 권287, 25년 2월 13일(임신); 권289, 25년 4월 8일(병인).

V. 맺음말

일반적으로 조선 성종 대는 사림의 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이해되고 있다. 김종직 문인들을 위시한 재야 사림들의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활발해 지는 가운데, 언론이 활성화되고 도학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는 한편, 국왕 성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이들 사림계 인사들을 적극 기용해 비대해진 훈구파를 견제했다는 이해이다.

현재 이러한 통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지주로서의 사림이라는 개념이 당시 통용되고 있던 사림이라는 용어와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이 시기 중앙 정계에서의 갈등을 재지사족의 등장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시기 향촌사회의 유교 문화 수용 정도 역시 통설과는 달리 매우 지체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성리학에 침잠하며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사들이 유향소 등을 기반으로 공론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재지사족사회에 대한 설명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러한 비판을 제기하는 수정주의적 견해들 역시 통설을 대체할만한 대안적인 역사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기는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 같은 측면에서 홍문관으로 대표되는 청요직에 대한 이해는 이 시기 중앙 정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갈등과 도학의 흥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는데 하나의 실마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성리학이라는 외래 사상이 조선에서 자기 것으로 소화되며 내면화 되는 계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고려 말부터 지배이념으로 수용된 성리학이 도덕적 권위에 가탁해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으로 주장하고 있던 홍문관과 청요직들에게 적극적으로 차용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심 권력기구로서의 청요직들이 지배이념으로서의 성리학 담론에 기대어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권력구조의 형성 속에서 성리학 사상이 내면화 되어갔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성리학이 중소지주의 학문이기 때문에 조선의 중소지주들에게 자연스럽게 수용되었다는 통설의 관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 같은 입장에서 16세기 이후 성리학이 홍문관과 같은 권력기구의 권력 행사의 배경으로 기능하며 사회 전체가 성리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된 상황에 주목하면서, 조선시대의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식 집단으로서의 홍문관과 권력으로서의 도학 -성종대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경래*

이 글은 성종대를 비롯해 이른바 조선 중기의 정치사에 대한 새롭고 의미 있는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발표자가 그간의 연구들을 종합, 정리한 논문이다. ‘들어가면서’에서 발표자는 ‘조선은 왜 그렇게 유학사상에 기초한 문물제도를, 특히 중국식 관료제와 유학사상을 발전시키고 있었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연구가 출발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로서 ‘홍문관-도학’의 연결고리를,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출발점으로서 성종대를 주목하였다. 발표자의 표현대로, 이러한 ‘지식-권력’의 문제는 조선시대 정치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대단히 유용한 틀임에도 그동안 각각의 영역에서 별개로 진행된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발표자의 그간 다른 글들과 마찬가지로 이 글 역시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토론자 역시 글을 읽으며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다만, 토론자로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궁금점들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1.

발표문에 따르면 결국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홍문관이라는 기구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발표자는 2장에서 ‘경연의 활성화’와 ‘홍문관의 설립’을 연결하면서 전자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홍문관에 주목한 글 전체의 논지를 따르다 보면 후자에 보다 방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즉, 성종 9년 2월이라는 시점에 홍문관이라는 기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유와 배경에 대한 해명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13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

* 전북대학교 역사교육과

성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성종 즉위 초부터 경연이 활성화되었다면, 기본적으로 이는 성종에게 ‘주어진’ 상황이었다. 그와 달리, 홍문관의 설립은 성종 7년 성종이 친정을 시작한 이후의 일로서, 그의 능동적 의지가 반영되었을 여지가 많은 사안이었다. 그렇다면 양자를 발표문에서 처럼 ‘경연 활성화의 결과로서 홍문관의 성립’ 정도로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사건의 의미를 구별하여 파악하는 시선도 필요할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홍문관의 설립’이라는 사건에 담긴 성종의 ‘정치적 의도’는 과연 찾을 수 없는지도 궁금하다. 각주 29)에서 간략히 언급하였지만, 본문에서 이를 보다 자세하게 다루어 주면 좋겠다.

2.

3장에서는 ‘청요직 중심의 권력구조 형성’을 얘기하면서, 성종대 홍문관원을 비롯한 청요직 관원들 사이에는 교류와 함께 유대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래도 ‘청요직 일반’을 다루다 보니 글에서는 홍문관과 대간 사이의 친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홍문관은 대간과 함께 언론 활동을 벌인 ‘삼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분명 대간과 차별화된 역할과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발표문 역시 특히 홍문관의 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 시기 대간과는 다른 홍문관만의 특징을 보다 자세하게 다루어 주면 좋을 것 같다. 다시 말해, 3장 후반부의 표현대로 홍문관이 ‘청요직 안의 청요직’이 된 이유와 배경, 홍문관이 삼사와 청요직 전반을 아우르는 “ ‘공’ 과 ‘도학’ 담론에 기초한 ‘도덕적 권위’ ”를 전유하게 된 이념적, 제도적 배경이 궁금하다.

3.

4장은 열심히 경연에 임하고, 언론을 우용했던 성종이 어느 순간 본인이 만든 정치환경에 구속되는 역설적 상황을 다루고 있다. 발표자는 이러한 상황을 ‘성리학적 군주상’에 충실하고자 했던 성종이 만든 결과로 평가하고, 이를 ‘道高于君 형세의 개막’이라 표현하였다. ‘(君臣)共治天下’, ‘同治天下’나 ‘得君行道’와 같은 슬로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일반적으로 중국 송대에는 臣權의 비약적 성장과 함께 군신관계에서 일대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도학자들은 학문을 매개로 군신관계의 역전까지 생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건국된 조선에서도 일찍부터 이러한 군신관계가 이념적 기준이었으며, 중종대 이래로는 세종대와 성종대가 나란히 군신관계의 모범 시기로 칭송되었다. 그렇다면 성종이 처한 이러한 정치환경은 세종의 그것과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4.

발표자는 평소 통설인 사림과 이론에 대해 열정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연구자 가운데 한 명이다. 이 글의 ‘맺음말’에 따르면, 발표자는 궁극적으로 사림과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성종대 홍문관을 비롯한 ‘청요직의 정치적 성장’과 그에 수반하여 나타난 ‘성리학 담론에 기반

권력의 행사' 를 변화의 출발이자 핵심으로 강조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비록 이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이러한 설명이 성종대 이후 연산군대와 중종대의 정치적 상황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나아가 중앙 정치의 장에서 생겨난 이러한 변화가 결국 '조선 사회 전체가 성리학을 내면화' 하는 상황과도 어떻게 이어지는지 발표자의 전망을 듣고 싶다.